

스포츠사고와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박종렬^o

^o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e-mail: park3822@kwu.ac.kr^o

A Study on Sports Accidents and Civil Liability

Jong-Ryeol Park^o

^oDepartment of Police & Law, Kwangju Women's University

● 요약 ●

현대사회에 있어서 스포츠는 혼란한 환경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쁜 우리들에게 긴장감을 완화시켜 주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도록 함과 동시에 삶의 질을 강화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단지 스포츠는 현대사회에서 체육인이나 운동선수에게만 한정된 영역이 아니라 스포츠가 새롭게 만들어 내는 수많은 대상은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하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통해서 국위선양은 물론 월드컵 축구 및 올림픽경기 등을 통한 국제사회에서 대단한 외교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또한 스포츠를 통한 국내외 경제활동에도 수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스포츠가 생활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로서 받아들이고 있으나, 스포츠와 관련하여 우연적으로 많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사고에 있어서 민법상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키워드: 스포츠사고(Sports Accidents), 민사책임(Civil Liability), 불법행위책임(Tort Liability), 채무불이행책임(Default Liability), 손해배상(Compensation for damages)

I. Introduction

스포츠는 이미 현대인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지 오래되었고, 또한 일반적인 사회활동 속에서 사회현상과 제도로 확립되어 사회의 다른 정책 등과도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형성하면서 날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처럼 스포츠는 현대인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하나의 중요한 삶의 필수조건이 되었고, 힐링 및 건강향상뿐만 아니라 여가활동수단은 물론 스트레스 완화방안과 지식의 장으로서 여러 방면으로 우리들 생활에 폭넓게 스며들고 있다.

스포츠가 현대인에게 가져다주는 의미를 그저 보고 즐기는 여가 선용의 수준에서 부여하는 보편적 흐름에 대한 나름 성찰의 초석을 마련해주는 목적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포츠와 생활은 전란적인 사회변화의 흐름 속에서 서로 관련성을 지니고 하나의 형태로써 생활방식과 계층구조 그리고 정치행위, 사회활동, 문화생활, 건강도모, 여가생활, 환경문제, 대외관계 등 여러 방면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스포츠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런데 스포츠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권리와 동시에 대중화되면서 일반적으로 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스포츠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스포츠사고를 둘러싼 문제점을 효율적으

로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General Theory and Legislation of Sports Accidents

1. Concept of Sports Accidents

사고란 인간이 어떤 목적을 수행하려고 실천하는 단계에서 급작스럽게 의욕에 반하는 예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물적·인적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렇듯 사고의 개념에 비추어 스포츠사고는 직접적으로 스포츠를 경험하거나 스포츠에 참여하는 당사자에게 예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및 재산적 그리고 나아가 정신적인 피해까지를 사고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는 그 자체의 성질상 즐기는 부분이 크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의 감성을 미묘하게 자극하는 다툼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를 통하여 동작을 필수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재산손괴 및 신체상 사고 등을 수반할 가능성이 무척 높아 스포츠 활동을 하는 당사자 시각에서 허락된 위험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스포츠사고이다. 따라서 스포츠는 경기장에 나가 관전 및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연습이나 경기를 직접 행하는 현대인들의 문화적인 활동까지 스포츠 범위 속에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1]. 스포츠에 있어서 위험성이란 신체적인 동작과 밀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한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 동기와 관계없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스포츠경기에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사고의 위험성은 언제나 존재할 수밖에 없다.

2. Causes of Sports Accidents

2.1 Physical Causes

스포츠경기장이나 스포츠 활동과 관련한 스포츠시설물에서 불가피하게 부상을 당하거나 의도와 상관없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는 경기장 건축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안전한 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예견 가능한 위험원인을 미리 제거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사전에 제거하지 못하여 사고를 당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경기장의 부실공사나 시설미비 및 결함에 따른 사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시설의 소유자는 설비에 하자가 있으면 안전에 충분한 조심을 기울였다고 하여도 면책이 불가능하다[2].

2.2 Invincible Causes

스포츠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로 볼 것인가? 또한 이에 대한 판단은 누구에 의해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매우 예민한 부분이다. 불가항력은 초기에 신의 영역이라 생각되어 온 천재지변에 기본을 두고 있었으나, 군사전쟁이나 총파업과 같은 행동 및 정전이나 기계고장과 같은 예상하거나 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반영하는 것보다 광의의 개념으로부터 발생하는 사고를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있다. 대체적으로 경기 도중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급격한 방전현상이나 강한 소나기나 우박을 동반하는 날씨에 의한 자연사고 등을 말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하기엔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한 이런 사유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리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농작물재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농업재해보험처럼 스포츠경기 운영자가 사전에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3 Human Causes

스포츠사고에 있어서 인적 원인은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들이다. 먼저 선수들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지나친 승부욕, 기술의 미숙, 경기 중 일탈행위, 불충분한 준비운동으로 인한 것, 지도자들의 지도능력과 관련하여서는 선수들의 신상을 제대로 파악 못한 부분, 그리고 생활환경이나 권위의식, 지나친 승부욕 등으로 유발되는 사고를 말한다.

2.4 Environmental Causes

스포츠사고에 있어서 환경적 원인을 두 가지로 파악해 볼 수

있는데, 먼저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바람, 비, 무더위 및 한파 등이고, 그리고 물리적 원인으로서는 경기장 통로의 협소, 환기시설 미비, 조명, 채광, 불완전한 복장 등을 들 수 있다[3]. 이러한 원인에 의해 스포츠 참가자들에게 부상과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다.

3. Foreign Legislation on Sports

3.1 Germany

독일은 현재 스포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헌법에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통일하기 전 서독의 모든 주의 헌법상에도 스포츠와 관련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었지만 최초로 베를린헌법에서[4] 스포츠양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사실상 스포츠향상을 위한 권리보장을 시작하게 되었다.

3.2 United Kingdom

영국은 1944년에 만들어진 「교육법」에서 국민들의 교육과 스포츠에 관련한 내용을 담은 규정을 만들었다. 특히 제41조에서 의무교육을 수료한 자가 스포츠 활동이나 레크레이션활동을 하기 위한 설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이를 수용할 의무는 지방교육당국에 있다는 것을 규정하였다[5]. 그리고 스포츠와 관련한 대부분의 행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피력한 것이다.

3.3 France

프랑스는 다른 나라에 비해 스포츠와 관련한 법이 많이 제정되어 있는 편이다. 1948년에 만들어진 「신약스포츠에 관한 법률」, 1951년 「수영에 관한 법률, 1975년 「체육 스포츠발전에 관한 법률」, 그리고 1984년 7월16일에 제정한 「신체적 및 운동경기 활동 단체와 증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6]. 프랑스 체육제도의 가장 큰 특성은 법률의 체계화·세분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별 민법인 「스포츠 특별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며, 스포츠와 관련한 이 특별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체육진흥법과 거의 비슷한데, 모두 4권의 법규는 스포츠인체활동의 구성, 스포츠인과 관계인, 스포츠추진의 다양화 및 실행 경비와 건강증진 스포츠산업 활동에 있어 별도의 세부 분야들을 다루고 있다.

3.4 United States

미국은 수정헌법 제10조에 의해 체육 및 스포츠와 관련한 권한과 책임은 여러 주와 시민들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한 스포츠행정은 각 주에 공원 및 레크레이션국을 설치하여 지방정부의 기준에 알맞게 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다[6]. 그리고 미국 올림픽위원회의 활동에 관하여 1978년도에 「아미추어 스포츠법」을 제정하였고, 또 1974년 「지역학교법」에서는 각 학교가 생활공동체 시민들에게 레크레이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심의회에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였다.

III. Sports Accidents and Civil Liability

1. Default Liability

일반적으로 스포츠경기에 있어서 계약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민법 제390조 규정에 의거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스포츠사고에 따른 계약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대체적으로 불완전이행이나 열정적 채권 침해의 법해석에 의해 수용될 수 있으며, 아울러 경기를 주관하는 자가 계약당사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민법 제391조 규정에 의거 운동에 참여하는 선수는 이행보조자로서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2. Tort Liability

일반적으로 스포츠사고에 있어서 당사자가 폭력이나 장난 등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50조에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7].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고의 및 과실, 가해행위의 위법성, 가해자의 책임성 등이 존재하여야 하며, 실질적으로 손해가 유발되어야 한다. 결국 가해행위가 범질서에 위반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런 불법적인 조건이 충분한 경우에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에 따른 배상을 범원에 청구 할 수 있을 것이다.

3. Damage Liability

스포츠사고에 있어서 손해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의거 통상의 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눌 수 있다[8]. 특히 스포츠경기는 항상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일정한 위법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며, 분명하게 가해행위와 손해 중간에 상관관계가 있어야 함은 물론 그 범위의 종류는 물적손해와 인적손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옳을 것이다.

4. Substantiation Liability

스포츠사고에 있어서 부상자나 피해자는 가해자의 뚜렷한 경기 규칙 위반과 책임 있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한다. 또한 지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지도자의 과실을 입증해야만 된다[9]. 이에 대해 가해자로 밝혀진 지도 경기규칙에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인체손해에 대해 본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정확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다.

IV. Compensation of Sports Accidents and Dispute Resolution

1. Significance of Accident Compensation

스포츠와 관련한 위험성을 극복하고 진취적으로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스포츠경기 운영자, 참여자, 그리고 지도자 등은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의 대비를 다함과 동시에 스포츠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비는 사고를 완화시킬 수 있겠지만 스포츠사고를 완전하게 제로로 만들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여 그 사고에 대한 사후 보상대책까지도 수립하는 두는 것도 중요하다.

2. Regulation about Compensation

2.1 Injury Insurance Subscription

스포츠경기 중 발생 가능성이 많은 위험성을 대비하기 위하여 인보험형식의 상해보험은 꼭 필요하다. 위험은 경기 도중의 사고뿐만 아니라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적인 측면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스포츠가 활발해짐에 따라 스포츠 사고를 안전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스포츠 상해보험은 스포츠 선수는 물론 경기와 관련한 당사자들에게도 가입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2.2 Life Insurance Subscription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생존, 사망, 생존과 사망에 대한 보험사고가 야기되는 경우에 보험자와 계약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처럼 스포츠경기 중 갑작스럽게 무리한 운동이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

2.3 Liability Insurance Subscription

스포츠 선수가 훈련과 운동경기 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는 개인책임보험을 말한다. 이 보험은 직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운동선수들은 본인 스스로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지만, 이 보험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충분히 해결하기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스포츠라는 특수한 상황과 운동선수라는 신분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2.4 Professional Sports Insurance Subscription

스포츠보험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위험이나 질병 등으로 부터 전방적인 보장이 아닌 일부분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만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와 관련한 모든 부분에 광범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전문스포츠보험 출시되어 선수는 물론 스포츠와 관계되는 모든 자들을 안정하게 보호할 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3. Dispute Resolution Strategies Based on Sports Accidents

3.1 Cause of the Disputes on Sports Accidents

스포츠경기는 경기운영상 규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항상 본질적으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고에 대한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하다.

3.2 Sports Disputes ADR

대안적 분쟁해결방안으로 ADR[10]가 있는데 이는 법원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포츠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 중에서 분쟁을 해결할 중재인들을 당사자 본인들이 직접 선임하여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교적 효율적으로 지출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이다. 또한 절차가 간단하고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쉽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쟁을 보다 빨리 해소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스포츠중재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많은 분쟁들이 우호적인 차원에서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3.3 Dispute Resolution by the National Compensation Act

공공시설의 하자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신체상 또는 경제적 손해를 끼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경기 도중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는 요양비, 휴업배상 등을 배상받을 수 있고, 물건이 훼손된 경우는 물건의 교환가액 및 수리비 등과 그리고 사망 시는 일실회익에 대한 내용으로 국가배상법에 의해 보상청구가 가능하다.

V. Conclusion

오늘날 스포츠는 현대인들의 활동과 연관성이 깊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른 정책 등과도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형성하면서 날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스포츠가 활성화되면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날로 급증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안문제를 어떻게 하면 보다 지혜롭게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스포츠사고와 관련한 책임문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끼치는 영향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사책임인 계약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범리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고, 대안적 분쟁해결방식인 ADR의 활성화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스포츠의 본질상 사고는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제지원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스포츠전문보험제도가 외국처럼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끝으로 스포츠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점에서 무엇보다도 사전예방교육을 충실하게 실시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REFERENCES

- [1] Seung-heum Back, "Jurisprudence of Risk Acquisition as a Reason for Indemnity in Sports Accident", 『Sports and Law』 Vol. 10, No. 2, Sports Entertainment Law Society, p.251, 2007.
- [2] Nam-ju Jung, "Legal responsibility for Sports / Athletics Accident", 『Korean Journal of Leisure Sports』 Vol. 8, Korea Leisure Sports Association, p. 44, 2004.
- [3] Bok-soon Gwon, "Study of Precedents on the Legal Liability of Sport Accidents in School",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won University Master Thesis, p.7, 2003.
- [4] Doo-woong Kim, "A Study on the Civil Liability in Sport Accidents" Hoseo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l thesis, p.27, 2011.
- [5] Hae-chul Byeon, "Constitutional Sports Rights", 『HUFS Global Law Review』 Vol. 7,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Law Institute, p.9, 1999.
- [6] Jae-young Sim, "A Study on Legal Liability and Relief of Physical Education · Sports Accident", Han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l Thesis, p.26, 1993.
- [7] Jong-ryeol Park, 『General Theory of Bond』, Jiseonggye, p.71, 2014.
- [8] Hyeong-woo Yang, 『The World of Civil Law - Theory and Cases』, PnC Media, p.1591, 2018.
- [9] Sam-in Han·Yong-jun Jung, "A Research on the Civil Responsibilities of Sports Accidents", 『Sports Entertainment and Law』, Vol. 16, No. 3, Korea Sports Entertainment Law Association, p.143, 2013.
- [10] Sang-chan Kim,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System", 『Law Study』 Vol. 16, Korean Law Society, p.11, 2004.